

#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29.

발의자 : 황희·안규백·민홍철

정성호·위성곤·신창현

김수민·김병관·권미혁

고용진·윤관석·권칠승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.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·관리·운영체계 등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,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또한 교통체계 관리·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, 공단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‘한국교통안전공단’으로 변경하고, 공단의 사업에 교통체계 관리·운영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, 공단

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명, 제1조, 제2조, 제6조제4호·제6호·제8호, 제6조제10호·제11호 신설, 제13조제1호, 제13조제4호·제5호 신설, 제16조의4 및 제24조의2 신설).

##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교통안전공단법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법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관리·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,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정부”를 “국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연구”를 “연구 및 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자동차서비스사업”을 “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4호(종전의 제12호) 중 “제11호”를 “제13호”로 한다.

10.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

## 11.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

제13조제1호 중 “출연금(出捐金)”을 “출연금(出捐金) 및 보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자산 운영 수익금

### 5. 그 밖의 수입금

제16조의4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4(사용료 등의 징수)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24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·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9조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”을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 제6조제10호”를 각각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 제6조제12호”로 한다.

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”을 각각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”을 각각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제7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”을 각각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통

안전공단”을 각각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 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⑥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2제4항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 공단”을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”을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⑧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및 제22조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”을 각각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⑨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”을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⑩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”을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”

으로 한다.

⑪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”을 각각 “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교통안전공단법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,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한국교통안전공단법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관리·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,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법인격) <u>교통안전공단</u>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 략)</li> <li>4. <u>정부</u>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</li> <li>5. (생 략)</li> <li>6.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·<u>연구</u></li> <li>7. (생 략)</li> </ol>	<p>제2조(법인격) <u>한국교통안전공단</u>----- -----.</p> <p>제6조(사업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u>국가</u>----- ----- -----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----- -----<u>연구 및 교육</u></li> <li>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8.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 의 긴급 수리, 재난 구제 등 을 위한 <u>자동차서비스사업</u> 9. (생 략)	8. ----- ----- -----사업
<신 설>  <신 설>	9. (현행과 같음) 10. <u>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</u>
10. • 11. (생 략)	11. <u>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</u>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 업에 딸린 사업  제13조(자금의 조달 등)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	12. • 13. (현행 제10호 및 제11 호와 같음) 14. -----제13호-----  제13조(자금의 조달 등) ----- ----- -----.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<u>출연금(出捐金)</u> 2. • 3. (생 략)  <신 설>  <신 설>  <신 설>	1. ----- <u>출연금(出捐金) 및 보조금</u> 2. •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자산 운영 수익금</u> 5. <u>그 밖의 수입금</u>  제16조의4(사용료 등의 징수) 공 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9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제24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 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·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9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-  
-----  
한국교통안전공단-----  
-----.